

사회보험제도 가입 안내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족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여러분이 가입해야 하는 의료보험·연금 가입 수속은 근무하는 회사에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회사에 가입 수속을 부탁해 주십시오.

※파트 타이머나 아르바이트인 분이라도 가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하시는 회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근무하시는 회사가 의료보험·연금 가입 수속을 취하지 않고, 의료보험·연금에 미가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 사무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입해야 하는 의료보험·연금 가입 수속은 거주하시는 시구정촌 관청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담당창구에서 직접 수속을 해 주십시오.

※무직인 분, 유학생 등으로 주 28 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는 분은 통상,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세한 내용은거주하시는 시구정촌 관청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담당창구에 상담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75 세 이상이라면,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게 됩니다.

★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주하시는 시구정촌 관청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담당창구에 상담해 주십시오.

※ 연금 사무소나 시구정촌 관청에 일본어 이외로 상담하는 경우에는 통역이 필요합니다.

◆ 어느 하나의 의료보험제도,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적용 사업소에 상용적으로 사용되는 한, 외국인이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것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보험자나 그 피부양자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한 때, 출산이나 사망한 때에 필요한 보험금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사업소란, 법인의 사업소 또는 상시 5 인 이상인 종업원을 사용하는 개인사업소(이미용, 여관, 또는 음식업 등 일정 직종을 제외)를 가리킵니다.

2.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대해서

① 75 세 미만으로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국인

② 75 세 이상인 외국인

으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의해서 정해진 재류기간이 3 개월 이상인 분(3 개월을 초과한 기간, 일본에 체재하는 것이 인정된 분을 포함.)이나 임시 체재 허가를 받은 분은 국민건강보험(①에 해당하는 분) 또는 후기고령자 의료제도(②에 해당하는 분)가 적용되며, 이것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또는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함으로써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때에 필요한 보험 금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보험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자기부담으로 됩니다.

3. 후생연금 보험제도 및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 사업소에 상용적으로 사용되는 한, 후생연금보험이 적용되며, 이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상용적인 사용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라도 일본 국내에서 주소를 가지는 분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함으로써 연령, 장애, 사망의 경우에 각각 노령연금, 장애연금(또는 장애 수당금), 유족연금 등이 지급됩니다.

또한, 일본에서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던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은 일본에서 출국한 후, 청구 수속을 함으로써 탈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또한, 일본과 연금 통산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대국의 연금 가입 기간이 있는 분은 일정 요건하에 연금 가입 기간을 통산해서 일본 및 협정 상대국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탈퇴 일시금을 받으면 탈퇴 일시금을 청구하기 이전의 연금 가입 기간을 통산할 수가 없게 됩니다.

※ 주) 후생연금보험의 탈퇴 일시금인 경우, 지급 시에 합계 세율 20.42%(소득세 20%+부흥특별소득세 0.42%)가 원천징수되지만,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는 세무서에 환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환부 청구의 수속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a.go.jp>)에서 확인해 주십시오.